

예 산 총 칙

2009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309,739,273 | 39,292,176 |
| 일반회계 | 894,323,245 | 26,829,697 |
| 특별회계 | 415,416,028 | 12,462,479 |
| 공기업특별회계 | 121,430,759 | 3,642,921 |
| 상수도사업 | 51,509,665 | 1,545,289 |
| 하수도사업 | 69,921,094 | 2,097,632 |
| 기타특별회계 | 293,985,269 | 8,819,558 |
| 공유재산관리 | 9,601,881 | 288,056 |
| 주택사업 | 36,100 | 1,083 |
| 의료급여기금 | 4,391,200 | 131,736 |
|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| 1,115,000 | 33,450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| 1,730,000 | 51,900 |
| 도시재정비촉진 | 517,000 | 15,510 |
| 도시개발 | 18,221,676 | 546,650 |
| 기반시설 | 1,210,000 | 36,300 |
| 교통사업 | 43,385,093 | 1,301,553 |
| 도시철도건설사업 | 213,777,319 | 6,413,320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'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' 와 같다.
단,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.

제 3 조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'채무부담행위조서' 와 같다.

제 4 조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'계속비사업조서' 와 같다.

제 5 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'명시이월사업조서' 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,471,382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200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3,7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